

#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11월 14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11월 1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40회 부천시의회(제2차 정례회)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(2007. 12. 11) 상정
- 제140회 부천시의회(제2차 정례회)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(2007. 12. 11) 원안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세정과장 윤 준 의)

가. 제안이유

-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(행정자치부 세제팀-2481, 2007. 10. 4.)됨에 따라,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농협중앙회 등이 구관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삭제함.(안 제31조 삭제)
- 2008. 1. 1.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순위 중에서 호주 승계인을 삭제함.(안 제36조제2항 제2호 삭제)
-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“1,000분의 215”를 “1,000분의 320”으로 조정함.(안 제42조제1항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현재 상속 개시된 자동차의 경우 소유 관계는?	○ 2008. 1. 1부터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순위 중에서 호주 승계인을 삭제함.

### 4. 토론요지

#### 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#### 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### 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### 6. 소수의견

○ 없 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##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77호
의결 년월일	2007. 12. 21 (제140회)

제출년월일 : 2007. 11. 14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# □ 제안이유

-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(행정자치부 세제팀-2481, 2007. 10. 4.)됨에 따라,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내용

- 가.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삭제함.(안 제31조 삭제)
- 나. 2008. 1. 1.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순위 중에서 호주 승계인을 삭제함.(안 제36조제2항제2호 삭제)
- 다.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“1,000분의 215”를 “1,000분의 320”으로 조정함.(안 제42조제1항)

##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를 삭제한다.

제3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.

제42조제1항 중 “1,000분의 215로”를 “1,000분의 320으로”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1조(구관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) ① 법 제266조제3항 “구관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구매,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</li> <li>2. 보관, 가공,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</li> <li>3. 생산 및 검사사업용 부동산</li> <li>4.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</li> </ol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관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
<p>제36조(납세의무자) ①·② 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호주 승계인</li> <li>3. (생략)</li> </ol> <p>③ (생략)</p>	<p>제36조(납세의무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 <p>&lt;삭 제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2조(세율)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,000분의 215로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2조(세율) ① ----- ----- 1,000분의 320으로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